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2019. 8. 19.

공 주 시



1. 게시기간 : 2019. 8. 19. ~ 2019. 9. 2.
2. 게시방법 :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
3. 직권말소일 : 2019. 8. 19.
4. 말소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강*백	건축물 위 치	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355
	주 소 (대장상주소)	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122	건축물 현 황	주2 1층 시멘벽돌 주택 69.48㎡ 부2 1층 시멘블럭/스레이트 부속사 39.6㎡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건축물의 철거·멸실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	